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제4차 간사회 개최

- ▶ 건설회관 리모델링 추진 결정
- ▶ 11월 중순경 회원 해외시찰 친목행사 실시 결정



우리시회는 지난 9. 16(수) 오후 3시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조중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구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을 소개하였으며 금호강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우리시회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4대강사업 분리발주금지 지침 시달등과 관련된 발주동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공동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건설회관 리모델링 시행 결정의 건과 ▶2009 회원친목행사 시행 결정의 건을 원안통과 하였다.

우선 건설회관 리모델링 시행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되 설계업자 선정등 세부사항은 『대구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에 위임하여 내실 있게 추진키로 하였으며, 회원 친목행사는 11월 2째 주에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건설회관 리모델링 추진 개요

■ 건설회관 건물 현황

- 준 공 : 1989년 12월 20일 준공
- 대지면적 : 569.3 m² (172.2평) / 연건평 : 284평 정도

■ 리모델링 추진이유

- 민원실과 사무실을 1층과 2층으로 이전하여 회원사 이용편의제공
- 준공후 20년이 도래하여 각종 설비와 내외관의 노후화로 정상적인 기능이 곤란한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회관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 개선

■ 층별 용도변경 계획

구 분	면적(평)	현 재	변 경	비 고
지하	54.7	공 실	-	
1층	22.6	임 대	민원실 및 창고	회원사 이용 편의 제고
2층	75.6	임원실	사무실, 사무처장실, 회장실	
3층	75.6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4층	55.7	회의실	임대용	

금호강 정비사업 발주 동향

■ 금호강 정비사업 개요

공구	구 간	개 요	공사비	비고
계	-	-	1,825	
44	낙동강합류점~경산시계 (L=41.4km)	하중도, 동촌유원지, 팔현지구	505	
45		하도정비 및 친수공간 - 보 4개소, 친수지구 18개소	1,320	

■ 우리협회와 대구시의 분할발주 추진

- 지난 7월 1차 턴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대구시에 금호강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등을 협의, 대구시도 확고한 의지로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추진
(내부적으로는 지역제한 규모 정도로 분할조정)

■ 정부의 분할발주 금지 시달

- 국토해양부는 9. 3(목) 해당 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에 공구분할 발주금지 공문 시달
※ 4대강사업은 2011까지 완료를 위해 마스터플랜수립시 사업의 효율성, 지역발전, 지역업체 참여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발주방식과 공구단 위를 결정하였으므로 대행공사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지시

■ 우리시회 및 대구시 대응

- 정치권등에 국토부의 분할금지 방침 철회토록 지원 요청
 - 조중수 회장 및 전제준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14(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토해양위원을 면담하는 등 지원요청
- 대구시에서도 금호강정비사업의 특성을 부각 지속적으로 정부 설득중
 - 금호강은 지류 도심하천으로 분류 공사외는 성격이 다른 소규모 친수공간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기단축등에도 효율적이라는 입장 관철 노력

※ 참고사항

- 대구업체가 지역업체로 참여가능 공구
 - 낙동강 21공구 및 낙동강(금호강) 44, 45공구 등 3개 공구
- 최저가낙찰제 발주시 PQ통과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공동수급체구성원)
500억원 이상	BB ⁺ 이상	구성원은 BB0이상
500억원 미만	BB ⁻ 이상	구성원은 B ⁺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 : 대표자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하며 최소지분10% 이상

정부계약제도 유권해석사례 설명회 개최



우리시회는 경북도회와 공동으로 조달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부계약제도 유권해석사례 설명회』를 지난 9.29(화)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홍금표서기관, 김대인 사무관 설태웅사무관, 최태홍주무관이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대구, 경북 회원사 업무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자체 발주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소재기간 요건 신설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업체 소재기간요건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시행('09.9.24)하였다.

■ 지역업체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 신설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시,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미만 소재한 업체의 경우 감점
 - PQ 심사(배점 : -15점)
 - 지역업체 모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0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15
 - 적격심사(추정가격 20억원 이상공사, 배점 : -5점)
 - 지역업체 모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5
- ※ 해당지역 신설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경과조치

-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평가

■ 시행일 : '09. 9. 24부터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9.9.21)하였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화
 - (중전) 계약체결시 '서명·날인' → (개정)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 **중전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에 한해 심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 가능토록 개선
-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 (중전)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

■ 공사입찰유시

-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인의 임직원)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
 -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추가 확인토록 개선

■ 적격심사기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 명확화
 -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시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업도 영업기간 합산 대상이 됨을 명확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 개정동향

조달청에서는 2009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본회는 우리시회등의 의견에 따라 지역제한기준금액 상향을 반영하여 6등급을 폐지하는 의견을 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조달청은 협회 의견을 반영하되 중소기업 공사배정물량 확대등을 위하여 증가된 시평액을 감안 등급기준과 배정규모를 다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고시(제2009-724호, '09.8.24) 하였다.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 대상업체
 -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수의계약공사를 제외
-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범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부적법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책임

1. 사건의 개요

甲 건설회사는 자신이 수주한 공사 중 화이바판넬공사를 건축물조립공사업자가 아닌 창호공사업자 면허를 가진 乙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乙 전문건설업체가 위 판넬공사를 마쳤음에도 원도급업체인 甲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설공제조합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과연 건설공제조합은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주장

지급보증약관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적법한 하도급이 아닌 때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판넬공사는 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만이 할 수 있음에도 창호공사면허를 가진 乙에게 이를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법한 하도급이 아니므로, 자신들은 위 지급보증약관에 위반되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58372 판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부적법한 하도급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보증인을 면책시킨다면 위 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①열면과 윗면의 외벽과 내벽을 판넬과 금속제 부품 등으로 조립하는 것으로서 창호공사와 그 공정이나 시공방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②이 사건 공사와 같은 판넬공사는 공사기법의 특성상 관련 법령이 개정된 1994년 말까지는 창호공사업 면허자가 모두 시공하였고 ③그 이후에도 화이바판넬을 사용하는 공사와 같이 특성에 따라서는 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자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④실제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화이바판넬공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시공상태도 양호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보증사고는 원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하도급의 부적법성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하도급의 부적법성만으로는 피고의 지급보증채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결 어

위 대법원 판결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 영세한 하수급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률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하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책임이 모두 면책한다면 위 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부당하므로, 하도급계약관계의 부적법함이 실제 보증사고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그 면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하수급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9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686,000	726,000	국제철스크랩과 및 고철가 급상승으로 톤당 4만원정도씩 인상되었으며 제강사 추가 인상에고중이나 건설사의 부정적인입장으로 쉽게 인상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수급은 원활한 편임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D13mm	676,000	716,000		
		D16mm	671,000	711,000		
	고장력 철근	D10mm	691,000	731,000		
		D13mm	681,000	721,000		
		D16mm	676,000	716,000		
후판	SM490B	880,000	880,000	최근 조선업계 수요증가로 수급에 애로 겪고 있음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50,000	900,000	톤당 5만원인상 하였으나 수요부진으로 설거해가는 그이하로 거래가능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50,000	900,000			
	400X400X13X21mm	950,000	98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650	3,65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상황도 원활함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0 단위: m 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벽돌	㉠190X90X57mm	45	45	수급 원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전체적으로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음	0 단위: m 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9~12X4.5	1,020	1,020	공급감소 요인으로 가격인상소지 있으나 수급 원활함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X3~3.6	1,180	1,180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09.01~09.30)	1	6	5	-	12
누계 (2009.01.01~09.30)	15	101	71	2	189



♣ 시내 대형건설현장 견학행사 추진계획

우리시회는 대구에서 가장 발전하는 범어네거리 부근의 최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공정관리 등을 견학코자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신청 바랍니다.

- 견학행사 일시 : 2009. 10. 28(수) 11:30 ~ 15:00
- 장소 : 범어4거리 두산위브 더 제니스 건설현장 등
- 참가대상자 : 회원사 대표이사
- 집결 및 오찬 : 뉴영남호텔 2층 한식뷔페(11:30분까지)

♣ 회원사 대표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 시행 알림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우리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2009년 경영연수를 시행키로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09. 11. 5(목) ~ 6(금) 1박2일
- 장 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소재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 교육대상자 : 영남, 호남권소재 회원사 대표이사
- 주요 교육내용
- 조합업무설명, 국토부 주요 건설정책, 리더쉽교육, 노무관리, 건강강좌, 화합의 장 행사등

♣ 2009 회원친목행사 실시

- 일정 및 행선지 : 2009. 11. 13(금) ~ 15(일) 일본 오사카 및 교토 일원
- 참가자격 : 회원사 대표 및 동반자



회장동정

☞ 건설공제조합 관련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9. 2(수) 12:00 자금성
- 하신일 : 대구지점과 대구중부지점 통합추진 관련사항 논의

☞ 대구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회의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9. 9. 8(화) 11:00 우리시회 2층 임원실
- 하신일 : 금호강발주동향 및 건설회관 리모델링 추진등 현안협의

☞ 금호강정비사업 분리발주를 위한 국회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09. 9. 14(월) 15:00 국회 의원회관
- 하신일 : 4대강 사업 분리발주금지 방침 철회지원 건의

☞ 제4차 간사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9. 9. 16(수) 15:00 우리시회 4층 회의실
- 하신일 : 부의사항 처리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다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72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9	63	16	3	1	172	△3
중 구	9	2		1		12	
동 구	10	8	2	1		21	
서 구	4	4			1	9	
남 구	10	5	1			16	
북 구	9	13	2			24	
수성구	25	21	2			48	
달서구	8	8		1		17	
달성군	14	2	9			25	

※ 신규1, 전출2, 등록말소2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호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백두종합건설(주)	토목030106	한 춘 자	2009.09.02	629-5940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우보건설(주)	권 오 성	박 성 덕	744-0142
소재지	송산엘앤씨	수성구 중동 29-5, 6층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13	764-1828
대표자 소재지	(주)성의건설	박 선 일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08-3	박선일, 신주원 강원 삼척시 정하동 187-12	033)576-0497